

 <p><b>거창군</b> Geochang County</p> <p>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</p>	<h1 style="font-size: 48px; margin: 0;">공 보</h1> <p style="font-size: 24px; margin: 0;">제859호 2022. 5. 18.(수)</p>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선 결	기관의 장

## 규 칙

거창군 규칙 제1340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 
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..... 2

거창군 규칙 제1341호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..... 9

## 고 시

거창군 고시 제 2022-58호 거창군관리계획(소로2-296호) 결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 ..... 11

거창군 고시 제 2022-59호 도로명주소 고시 ..... 12

## 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22-797호 거창군관리계획(시설:수도공급설비)결정(변경)을 위한 재열람 공고 ..... 13

<b>회 램</b>									
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거창군 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 
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 
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 
한다.

거창군수 권한대행      김 태 희  
부      군      수

---

2022년 5월 18일

거창군 규칙 제1340호

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공무원  
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

제1조(「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거창군  
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명 “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”을 “거창군 공무원  
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, 제3조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2항,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4조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  
를 “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법률」”을 “「공무원직  
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하며,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 
에는 협의회 서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.”를 “한다.”로 한다.

제2조(「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”를 “「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헌장”을 “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”(이하 “헌장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례 제4조에 의해”를 “「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4조에 따라”로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”를 “ 경우”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때”를 “ 경우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“종합민원실장”을 “민원소토과장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“민원봉사과장”을 “민원소통과장”으로 “때”를 “ 경우”로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“때”를 “ 경우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5인이내”를 “15명 이내”로 “과반수이상”을 “과반수 이상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“「거창군 직무대리규칙」”을 “「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」”으로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“자로”를 “사람으로”로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“다음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한다.

제3조(「거창군민상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거창군민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거창군민상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”를 “「거창군민상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거창군민상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군민상후보자”를 “거창군민상 후보자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“때는 군민상수상후보자”를 “때에는 거창군민상 수상후보자”로 “으로 하여금”을 “에게”로 “확인하여 군민상심사위원회”를 “확인하게 하고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군민상심사위원회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는 조례 제7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 조 제목 “(기타사항)”을 “운영세칙”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“군민상심사위원회”를 “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**제4조(「거창군반운영규칙」의 개정)** 거창군반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반운영규칙”을 “거창군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거창군 반 설치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며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총의를 거쳐 선출된 사람을 읍·면장이 위촉·해촉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“공지사항에 계도, 주지”를 “공지사항에 관한 홍보 및 지도”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“주민계도”를 “주민 지도”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“시혜”를 “혜택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“지도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다음 각 호”로 “자로”를 “사람으로”로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“투철하고”를 “투철한 사람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“높으며”를 “높은 사람”으로

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과”를 “다음 각 호와”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“여망”을 “건의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역무”를 “업무”로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“공여”를 “제공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반상회의 임무 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”을 “반내 주민에게 알려야 할”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사항들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항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“사항 주지”를 “사항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“새소식사항 주지”를 “새소식사항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“여망”을 “건의”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요령과 같이”를 “다음 각 호와 같이”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“분담시킨다.”를 “분담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“상급자에 분담시킨다.”를 “상급자에게 분담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“분담시킨다.”를 “분담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“이상의”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”로 “분담케 한다.”를 “분담”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여망”을 “건의”로 “다음에 의하여”를 “다음 각 호에 따라”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“조치한다.”를 “조치”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“타기관”을 “다른 기관”으로 “복명서의 접수로부터”를 “결과 보고서의 접수일”로 “보고한다.”를 “보고”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“장시일을 요하는”을 “오랜 기간이 필요한”으로 “통보한다.”를 “통보”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표 서식”을 “별지 서식”으로 한다.

제11조 조 제목 “(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)”를 “(반상회에 부칠 행정적인 의제)”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“부의할”을 “부칠”로 “지참 설명한다.”를 “설명한다.”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 제7조의 각 호”를 “제7조 각 호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1~2회”를 “연 1회 이상”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

의안 번호	2022-37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	2022. 5. 10.
제 출 자	기획예산담당관

## 1. 제안 이유

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어려운 용어 등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를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·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### 가.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

#### 1) 정부합동평가대상: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 미반영(안 제1조·제2조)

##### 가) 제명 개정사항 반영

(1) 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 관한법률」 ⇒ 「공무원직장  
협의회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(2) 「거창군 직무대리규칙」 ⇒ 「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」

#### 2) 자율정비대상: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 등(안 제1조~제4조)

##### 가) 어려운 용어 순화, 띄어쓰기

(1) 규정에 의한(의하여) ⇒ 에 따른(따라), 당해 ⇒ 해당

(2) 자 ⇒ 사람, 기타 ⇒ 그 밖에, 한 때 ⇒ 한 경우

(3) 각호 ⇒ 각 호

##### 나) 법령 입안원칙에 맞게 정비

(1) 목적조항에는 약칭표현 올 수 없음에 따라 약칭표현 삭제

(2) 호에는 완전한 문장 원칙적으로 올 수 없음에 따라 단어나  
어절 등의 형식으로 정비

(3) 조례 위임에 따른 위임규칙임을 명확히 함

(가)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

⇒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

(나) 거창군반운영규칙 ⇒ 거창군 반설치조례시행규칙

3) 일괄정비대상 규칙 4건

- (가)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
- (나) 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
- (다) 거창군민상조례 시행규칙
- (라) 거창군반운영규칙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2. 4. 18.~5. 9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

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거창군수 권한대행  
부 군 수 김 태 희

2022년 5월 18일

거창군 규칙 제1341호

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업명	세부지원 기준
2. 청년 디딤돌통장	가. 지원요건 1) <u>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군에 주소를 둘 것</u> 2) <u>공고일 기준 35세 이상 45세 이하일 것</u> 3) <u>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노동자일 것</u> (가) 피고용주 또는 고용주(소상공인에 준한 자를 말한다) (나) 농업·축산업·임업 종사자(증명서 발급 가능한 청년에 한정한다) 4) <u>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일 것</u> 5) <u>지급 시까지 군에 주소를 유지할 것</u>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의안 번호	2022-38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	2022. 5. 9.
제 출 자	인구교육과장

### 1. 제안 이유

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청년디딤돌통장 지원사업과 중복이 발생하여 국비 지원사업 우선 추진을 위하여 청년디딤돌통장 지원 기준을 변경코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청년디딤돌통장사업 지원요건 변경(안 별표)

1) 청년범위 축소

- 가) 19세 이상 45세 이하 ⇒ 35세 이상 45세 이하
- 나) 국비 지원사업 대상 제외: 19세 이상 34세 이하

2)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축소

- 가) 130퍼센트 이하 ⇒ 100퍼센트 이하
- 나) 국비 지원사업 기준과 같게 함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·제29조, 「거창군 청년기본 조례」 제16조의2

나. 예산조치: 2022년 본예산 240백만원 반영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2. 4. 11.~5. 2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●거창군 고시 제2022-58호

거창군관리계획(소로2-296호) 결정(신설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창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신설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 도서[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가능]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8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2년 05월 18일

거창군수

1. 거창군계획시설 결정(신설) 조서

○ 도로 결정(신설)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형 태	주 요 경 과 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 별	번호	폭 원 (m)								
신설	소로	2	296	9	국 지 도로	121	소로 2-294	소로 3-263	일반 도로	-		

○ 도로 변경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소로 2-29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도로 신설 - B=9m, L=121m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지2지구 주택건설사업 대상지(공동주택)의 원활한 진출입 위한 진입도로 신설</li> </ul>

2. 관계 도면 : 게재생략

## 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5. 18.

거창군수

○ 도로명주소 고시대상

- 건물번호 부여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7길 14 등 9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 (변경·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램)	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 거창군관리계획(시설: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을 위한 재열람 공고

거창군 공고 제2022-438호(2022. 03. 23.)로 열람 공고한 거창군관리계획(시설: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대하여 거창군 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재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5월 18일

# 거 창 군 수

### 1.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수도공급설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수도 공급 설비	거창읍 양평리 458-20번지 일원	22,912	증) 2,782	25,694		

나. 수도공급설비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경사유
1	수도 공급 설비	면적증가 22,912㎡→25,694㎡ (증2,782㎡)	· 거창읍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 기 거창정수장을 증설하여 배수시설 확 충으로 수요 증가에 미연에 대비하고 안 정적인 급수 공급을 하기 위함

2. 주요 내용 : 확장구역 내 포함된 사유지 면적 제척(25,922㎡→25,694㎡, 감228㎡)
3. 관계 도면 : 실음생략(열람장소 비치)
4. 관계 도서[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가능]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8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